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출 연 안 상 정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17-	거창승강기R&D센터 출연(안) - 초고속승강기활성화 지원	1
2017-	거창승강기R&D센터 출연(안) - 승강기시험인증 활성화	6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1
2017-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0
2017-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출연(안) -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 지원	27
2017-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출연(안) - 거창화강석 신기술개발 지원	32
2017-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	38

거창승강기R&D센터 출연 심의(안)

- 초고속승강기활성화 지원 -

의안 번호	2017-
----------	-------

제출연월일 : 2017. 10. .
제 출 자 :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결을 거친 후 「거창승강기 R&D센터 초고속 승강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2018년도 거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 초고속 승강기를 설치하여 거창승강기 기술력 부각 및 승강기 명품도시 구축

2. 출연개요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및 제41조
 -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14조
- 대 상: 한국산업기술시험원(거창승강기R&D센터)
- 사 업 비: 460백만원(군비)
 - 2018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사업기간	2017년 예산액	2018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민 간
2018년		460	460			460	

○ 사업내용

- 초고속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 적재하중 24인승, 정격속도 360m/min, 5개 정지층, 티타늄 카 인테리어 마감으로 고급화 실현
- 핵심부품 연구개발 학습기회 제공: 거창승강기밸리 입주기업에 초고속용 승강기 경험으로 핵심부품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거창 승강기밸리 입주기업은 정격속도 150m/min까지 제작가능)

3. 부서의견

- 대부분 승강기 정격속도는 120m/min이며, 240m/min일 경우 우수 기업체로 인정을 받고 있어,
- 거창의 상징물인 거창승강기R&D센터 내 “테스트타워”에 초고속 (360m/min) 승강기를 설치하여 국·내외 바이어 및 관광객, 군민들에게 시승 체험으로 거창승강기 기술력 과시 및 승강기도시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다양한 잠재 고객들에게 승강기 인지도와 구매 욕구 확산으로 매출증대, 고용창출 등의 산업 활성화 기대 및 거창승강기 명품도시 구축을 위해 2018년 군비 출연금 460백만원 교부가 타당함

4.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붙임 1
- 관계 법령: 붙임 2

[붙임 1] 출자·출연 기관현황

한국산업기술시험원(거창승강기R&D센터)

설립근거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41조				전화번호 : 080-808-0114		
					홈페이지 : www.ktl.re.kr		
주요연혁	1966년 : 한국정밀기기센터(FIC) 설립 1983년 : 기업기술지원센터(한국기계연구소부설) 1989년 : 품질평가센터(생산기술연구원부설) 1999년 : 산업기술시험원(한국산업기술평가원부설) 2006년 : 한국산업기술시험원(독립법인 출범) 2015년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진주 이전			기관형태 (출연)	기타공공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출연기관)		
인원현황 (‘16.12.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862명		719명		143명		
임원 (‘17.9.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기관장 (당연직)	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2017. 10. 26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주요기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최고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관으로 시험인증과 기술지원을 통한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거창승강기R&D센터) - 승강기 KC안전인증 및 시험평가 지원 / 제품개발 지원/ 해외인증획득 지원 / 수출시장개척 지원 / 네트워크 등 승강기분야 One-Stop 통합지원 솔루션 제공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88,929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169,973 (자산 총액)
	예산액	135,317	133,090	-		부채	81,044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00	100	-		자본	88,929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33,090			135,109		-2,019	

[붙임 2] 관련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약칭: 산업기술혁신법)

[시행 2017.9.15.] [법률 제14592호, 2017.3.14.,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5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3.8.6.>

1.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2.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3.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⑤ 기술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⑦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①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시험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시험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기업지원과) (시행일 : 2017.05.10)

(제정) 2009.10.07 조례 제1941호

(전부개정) 2011.08.08 조례 제2043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228호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4조

(일부개정) 2017.05.10 조례 제2367호

제14조(승강기R&D센터 지원) ① 군수는 승강기R&D센터가 승강기산업체의 기술개발 및 장비 지원 등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거창승강기R&D센터 출연 심의(안)

- 승강기시험인증 활성화 -

의안 번호	2017-
----------	-------

제출연월일 : 2017. 10. .
제 출 자 :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결을 거친 후 승강기 시험·인증 활성화사업 지원에 대한 출연금을 2018년도 거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거창승강기R&D센터 시험·인증 운영체계 활성화를 통해 승강기 허브도시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출연개요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및 제41조
 -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5조 및 제14조
 - 거창승강기R&D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3조(2013.12.20)
- 대 상: 한국산업기술시험원(거창승강기R&D센터)
- 사 업 비: 100백만원(군비)
 - 2018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사업기간	2017년 예산액	2018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민 간
2018년	-	100	200			100	100

○ 사업내용

- 승강기 시험·인증 업무 활성화
 - 거창승강기R&D센터 시험실 작업·연구환경 개선
 - 테스트타워 시설 환경안전 개선
 - 승강기 시험인증관련 세미나 개최, 기술자료 배포
 - 기업지원용 시험·인증업무 지그제작, 재료구입
 - 시험인증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시험장비 부대시설 구축, 장비 업그레이드 교정
 - 시험인증분야 신규 사업 개발
- 거창승강기밸리 홍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 승강기밸리 홍보/마케팅 팸플릿 제작·배포
 - 승강기 테스트타워를 활용한 밸리 홍보

3. 부서 의견

- 거창승강기R&D센터 운영을 위한 경상남도, 거창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경남테크노파크와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따라 승강기제품 시험·인증 및 성능평가, 해외인증, 엔지니어링 등 승강기분야 지원업무 활성화, 거창승강기밸리 홍보 강화 및 거창승강기R&D센터의 자립화 기반확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거창군은 거창승강기R&D센터가 경남 서북부지역의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군비 출연금 100백만원 교부가 타당함

4.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붙임 1
- 관계 법령: 붙임 2

[붙임 1] 출자·출연 기관현황

한국산업기술시험원(거창승강기R&D센터)

설립근거	법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41조				전화번호 : 080-808-0114		
					홈페이지 : www.ktl.re.kr		
주요연혁	1966년 : 한국정밀기기센터(FIC) 설립 1983년 : 기업기술지원센터(한국기계연구소부설) 1989년 : 품질평가센터(생산기술연구원부설) 1999년 : 산업기술시험원(한국산업기술평가원부설) 2006년 : 한국산업기술시험원(독립법인 출범) 2015년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진주 이전				기관형태 (출연)	기타공공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출연기관)	
인원현황 (‘16.12.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862명		719명		143명		
임원 (‘17.9.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기관장 (당연직)	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2017.10.26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주요기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최고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관으로 시험인증과 기술지원을 통한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거창승강기R&D센터) - 승강기 KC안전인증 및 시험평가 지원 / 제품개발 지원/ 해외인증획득 지원 / 수출시장개척 지원 / 네트워크 등 승강기분야 One-Stop 통합지원 솔루션 제공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88,929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169,973 (자산 총액)
	예산액	135,317	133,090	-		부채	81,044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00	100	-		자본	88,929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33,090				135,109		-2,019

[붙임 2] 관련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약칭: 산업기술혁신법)

[시행 2017.9.15.] [법률 제14592호, 2017.3.14.,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5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3.8.6.>

1.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2.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3.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 ⑤ 기술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⑥ 정부는 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⑦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①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시험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시험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기업지원과) (시행일 : 2017.05.10)

(제정) 2009.10.07 조례 제1941호

(전부개정) 2011.08.08 조례 제2043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228호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4조

(일부개정) 2017.05.10 조례 제2367호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밸리 조성 및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및 육성
2. 승강기산업집적화 단지, 연구소, 생산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3. 승강기 기술개발, 시제품 및 신상품 개발, 상업화 기술개발
4. 승강기대학 및 승강기R&D센터 특성화, 국제교류 및 협력, 기업정보화
5. 승강기산업단지 조성·분양 및 임대사업
6. 승강기 인력양성, 승강기산업 창업보육, 승강기산업 생산지원 확충사업, 승강기 제품 시험·인증사업
7. 그 밖에 승강기산업의 교류협력·마케팅·홍보·전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승강기R&D센터 지원) ① 군수는 승강기R&D센터가 승강기산업체의 기술개발 및 장비 지원 등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의안 번호	2017-
----------	-------

제출연월일 : 2017. 10. .

제출자 :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2018년도 거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거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출연개요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 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1조
- 대 상 : 한국지방세연구원(대표 공석)
- 사 업 비 : 3,7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17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천원)

사업기간	2017년 예산액	2018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7년	3,200	3,700	3,700			3,700	

- 사업내용
 - 지방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 등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과제 선정, 연구 수행

3. 부서의견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 없음.

4.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 붙임 1
- 관계 법령 : 붙임 2
- 기타 참고자료(출연금 배정 협조공문 등) : 붙임 3

[붙임 1] 출자·출연 기관현황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세기본법151조				전화번호 : 02-2071-2798		
	시행령 :				홈페이지 : www.kilf.re.kr		
조 례 :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인원현황 (2017년 5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1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30명 (5명) * 임원 등을 포함한 정규직원수를 기재하되 과건되거나 당연직 (지자체임원 등) 공무원 수는 여기에 포함하지 말고 괄호() 로 표시) ※ 예 : 12명 (4명)		21명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인원수를 기재)		
임 원 (2017년 5월 현원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 사 장	공 석				공 석	
	부이사장	송○○	○○광역시 ○구 구청장			2017.02.28~2018.02.27	
	원 장	공 석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공 석	
	이 사	최○○	○○부 지방세제정책관			당연직	
	이 사	김○○	○○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17.02.28~2018.02.27	
	이 사	신○○	○○광역시 자치행정국장			2017.02.28~2018.02.27	
	이 사	우○○	○○도 자치행정국장			2017.02.28~2018.02.27	
	이 사	김○○	○○도 기획조정실장			2017.02.28~2018.02.27	
	이 사	이○○	○○도 ○○시 부시장			2017.02.28~2018.02.27	
	이 사	신○○	○○도 ○○군 부군수			2017.02.28~2018.02.27	
	이 사	이○○	○○광역시 ○구 부구청장			2017.02.28~2018.02.27	
	이 사	손○○	○○대학교 교수			2017.02.28~2019.02.27	
	감 사	김○○	○○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감 사	조○○	○○특별시 재무국장			2016.02.28~2018.02.27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38,236 (자산 총액)
	예산액	7,518	8,406	9,986		부채	99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7,198	8,276	9,551		자본	8,623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8,933			6,912		2,020	

[붙임 2] 출연금 및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524호, 2017.1.4.,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3.28.] [대통령령 제27958호, 2017.3.27., 전부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지역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 연구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회 사전심의를 위한 관련자료 송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 심의(안) 작성을 위한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 하오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년 출연금 의회 사전심의 자료 2.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 자료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세제과장), 부산광역시(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세정과장), 광주광역시(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세정과장), 울산광역시(세정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세정담당관),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정담당관), 경상북도지사(세정담당관),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종로구청장(세무1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 용산구청장(세무1과장), 성동구청장(세무1과장), 광진구청장(세무1과장), 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 중랑구청장(세무1과장), 성북구청장(세무1과장), 강북구청장(세무과장), 도봉구청장(징수과장), 노원구청장(재무과장), 은평구청장(세무1과장), 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 마포구청장(징수과장), 기획재정부(재무과장), 강서구청장(재무과장), 구로구청장(징수과장), 금천구청장(세무1과장), 영등포구청장(세무과장), 동작구청장(세무1과장), 관악구청장(세무1과장), 서초구청장(세무1과장), 송파구청장(세무1과장), 강동구청장(세무1과장),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영도구청장(세무과장), 부산진구청장(시제과장),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세무1과장),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세무과장), 해운대구청장(세무1과장), 사하구청장(세무과장), 금정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세무과장), 연제구청장(세무과장), 수영구청장(세무과장), 사상구청장(세무과장), 기장군수(세무과장),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세무1과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세무1과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세무과장), 달성군수(세무과장),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세무과장),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세무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강화군수(재무과장), 인천광역시 옹진군수(재무과장),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세무1과장),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세무과장),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세무1과장),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세무과장),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세무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세무과장),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세무1과장),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세무과장), 울주군수(세무1과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세무팀장), 수원시장(세정과장), 성남시장(세정과장), 고양시장(세정과장), 부천시청(세정과장), 용인시장(세정과장), 안산시청(세정과장), 안양시장(세정과장), 남양주시청(세정과장), 의왕시장(세정과장), 평택시장(세정과장), 시흥시장(세정과장), 화성시장(세정과장), 광명시장(세정과장), 파주시청(세정과장), 군포시장(세정과장), 광주시장(세정과장), 김포시장(세정과장), 이천시청(세무과장), 구리시장(세무과장), 양주시청(세무과장), 안성시장(세무과장), 포천시청(세정과장), 오산시청(세무과장), 하남시장(세무과장), 의왕시장(세무과장), 여주시청(세무과장), 동두천시청(세무과장), 양평군수(세무과장), 파천시청(세무과장), 가평군수(세정과장), 연천군수(세무회계과장), 춘천시청(세정과장), 원주시청(세무과장), 강릉시장(세무과장), 동해시장(세무과장), 태백시장(세무과장), 속초시장(세무과장), 삼척시장(세무과장), 홍천군수(재무과장), 횡성군수(세무회계과장), 영월군수(재무과장), 평창군수(재무과장), 정선군수(세무회계과장), 철원군수(세무과장), 화천군수(재무과장), 양구군수(재정운영과장), 인제군수(세무회계과장), 고성군수(재무과장), 양양군수(세무회계과장), 청주시청(세정과장), 충주시청(세정과장), 제천시청(세정과장), 보은군수(재무과장), 옥천군수(재무과장), 영동군수(재무과장), 증평군수(재무과장), 진천군수(세정과장), 괴산군수(재무과장), 음성군수(재무과장), 단양군수(재무과장), 천안시장(세정과장), 공주시청(세무과장), 보령시장(세무과장), 아산시청(세무과장), 서산시청(세무과장), 논산시청(세무과장), 계룡시장(세무회계과장), 당진시장(세무과장), 금산군수(재무과장), 부여군수(재무과장), 서천군수(재무과장), 청양군수(재무과장), 홍성군수(재무과장), 예산군수(재무과장), 태안군수(재무과장), 전주시장(재무과장), 군산시청(세무과장), 익산시청(세무과장), 정읍시장(세정과장), 남원시장(재정과장), 김제시장(세정과장), 완주군수(재정관리과장), 진안군수(기획재정실장), 무주군수(재무과장), 장수군수(재무과장), 임실군수(재무과장), 순창군수(재무과장), 고창군수(재무과장), 부안군수(재무과장), 목포시장(세정과장), 여수시장(세무과장), 순천시청(세무과장), 나주시청(세무과장), 광양시장(세정과장), 담양군수(세무회계과장), 곡성군수(재무과장), 구례군수(재무과장), 고흥군수(재무과장), 보성군수(재무과장), 화순군수(재무과장), 장흥군수(재무과장), 강진군수(세무회계과장), 해남군수(세무회계과장), 영암군수(재무과장), 무안군수(재무과장), 함평군수(재무과장), 영광군수(세무회계과장), 장성군수(재무과장), 완도군수(재무과장), 진도군수(세무회계과장), 신안군수(세무회계과장), 포항시장(세정과장), 경주시청(세정과장), 김천시청(세정과장), 안동시장(세정과장), 안동행정국장(세무과장), 영주시청(세무과장), 영천시청(세정과장), 상주시청(세정과장), 문경시장(세무과장), 경산시청(세무과장), 군위군수(재무과장), 의성군수(재무과장), 청송군수(재무과장), 영양군수(재무과장), 영덕군수(재무과장), 청도군수(재무과장), 고령군수(재무과장), 성주군수(재무과장), 칠곡군수(세무과장), 예천군수(재무과장), 봉화군수(재정과장), 울진군수(재무과장), 울릉군수(재무과장), 창원시장(세정과장), 진주시청(세무과장), 통영시장(세무과장), 사천시청(세무과장), 김해시장(회계과장), 밀양시장(세무과장), 거제시장(세무과장), 양산시청(세무과장), 의령군수(재무과장), 함안군수(재무과장), 창녕군수(재무과장), 남해군수(재무과장), 하동군수(재무과장), 산청군수(재무과장), 함양군수(재무과장), 거창군수(재무과장), 합천군수(재무과장),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세무과장), 김해시장(남세과장), 울산광역시중구청장(세무1과장), 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세무1과장)

대리	행정지원부장	경영지원본부 2017. 5. 26. 장
협조자		
시행	경영지원본부-939 (2017. 5. 26.)	접수 재무과-12807 (2017. 5. 26.)
우 072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 원	한국지방세연구 / http://www.kilf.re.kr
전화번호 02-2071-2798	팩스번호 02-2071-2722	/ monsy1@kilf.re.kr / 대국민 공개



경 상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160호(2017. 8. 10.)와 관련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을 통보하오니,
3. 각 시·군에서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예산편성, 통보, 정산 등 필요한 절차를 원활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붙임 출연금 산정서식에 따라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산정하여 '17. 8. 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1부.
2. 2018년도 출연금 집계표 1부. 끝.

경 상 남 도 지 사

수신자 전 시군 세무부서장

주무관	세정담당	세정과장	전결 2017. 8. 14.
협조자			
시행	세정과-10372	(2017. 8. 14.)	접수 재무과-20443 (2017. 8. 14.)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세정과 (사림동)	/ http://gyeongnam.go.kr
전화번호	055-211-3717	팩스번호 055-211-3919	/ u7902041@korea.kr / 비공개(5)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심의(안)

의안 번호	2017-
----------	-------

제출연월일 : 2017. 10. .
제 출 자 :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출연개요

- 근거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기본재산)
- 대 상: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 사 업 비: 100,0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18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사업기간	2017년 예산액	2018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8년	100	100				100	

- 사업내용
- 거창군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컨설팅 지원

3. 부서의견

-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관인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금 지원
- 경기불황과 소비위축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 확대를 통한 경영위기 극복 및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함

4.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붙임 1
- 관계 법령: 붙임 2
- 기타 참고자료(출연금 배정 협조공문 등): 붙임 3

[붙임 1]

경남신용보증재단

설립근거	법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전화번호:1644-2900	
			홈페이지:www.gnsinbo.or.kr	
주요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 6월 경남신용보증조합 설립(경기재단에 이어 전국 2번째) ○ 2000년 3월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 ○ 2004년 9월 진주지점 개점 ○ 2006년 1월 양산지점 개점 ○ 2008년 5월 마산지점 개점 ○ 2009년 7월 거제지점 개점 ○ 2010년 4월 김해지점 개점 ○ 2011년 4월 사천지점 개점 ○ 2011년 5월 중소기업 지원유공단체 국무총리 표창 수상 ○ 2011년 7월 통영지점 개점 ○ 2011년11월 누적 신용보증 지원업체수 10만개 달성 ○ 2014년 3월 누적 신용보증 지원금액 3조원 달성 ○ 2015년 1월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직개편 시행 (2본부3부1팀 ⇒ 1본부2부8지점) ○ 2015년 4월 거창지점 개점 ○ 2015년 5월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 2015년 8월 누적보증공급 4조원 달성 ○ 2016년 5월 창녕지점 개점 ○ 2017년 6월 고객지원센터 개점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17.9.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87 명	83 명	4 명	
임원 (‘17.9.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당연직)	이○○	(주)영해엔지니어링 대표이사	2년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백○○	경상남도기업지원과장	2년
	"	김○○	경남중소벤처기업청장	"
	"	최○○	현대로템(주)생산본부장	"
	"	김○○	경남은행 창원영업본부장	"
	"	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	"
	"	최○○	농협은행 경남영업부장	"
	감사	송○○	공인회계사송정아사무소 대표	"
주요기능	- 신용보증, 기본재산관리, 구상권의 행사			

자본금 (단위:백만원)		196,603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94,997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223,553 (자산 총액)
	예산액	8,592	8,768	9,500		부채	26,950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0	0	0		자본	196,603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5,986				18,634		-2,648

[붙임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 조 공 문

인쇄 : 성기탁 / 경제교통과 (2017-09-25 17:37:12)

단 1원의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경 상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신용보증재단 출연 협조 시·군 과장 회의('17.3.15., '17.9.12.)

2. 우리 도에서는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신용보증) 기반이 되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신용보증과 리스크가 높은 특례보증 확대 등으로 향후 재단의 안정적 보증공급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3. 특히, 그간 재단 출연금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신용보증을 통하여 직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고 있는 시·군의 출연금 비율이 2.8%('17.8월기준)불과하며, 이는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보증공급과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각 시·군의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을 요청하오니 붙임의 '시·군별 출연금 산정현황'을 참고하여 2018년 당초예산에 출연금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시군 출연금 지원 협조 1부. 끝.

경 상 남 도



수신자 창원시장(경제기업사랑과장), 창원시장(예산담당관), 진주시장(지역경제과장), 진주시장(기획예산과장), 통영시장(지역경제과장), 통영시장(기획예산담당관), 통영시장(기획예산과장), 사천시장(기획예산담당관), 김해시장(일자리정책과장), 김해시장(기획예산담당관), 김해시장(지역경제과장), 밀양시장(기획감사담당관), 거제시장(조선해양플랜트과장), 거제시장(기획예산담당관), 양산시장(경제기업과장), 양산시장(기획편), 의령군수(경제교통과장), 의령군수(기획감사실장), 함안군수(경제교통과장), 함안군수(기획감사실장), 함양군수(경제도시과장), 함양군수(기획감사실장), 고성군수(경제교통과장), 고성군수(기획감사실장), 남해군수(경제과장), 남해군수(기획감사실장), 하동군수(경제수산과장), 하동군수(기획조정실장), 산청군수(경제도시과장), 산청군수(기획감사실장), 함양군수(경제교통과장), 함양군수(기획조정실장), 거창군수(경제교통과장), 거창군수(기획감사실장), 함천군수(경제교통과장), 함천군수(기획감사실장)

주무관 하승훈 소심공민지원 담당 김현주 기업지원과장 전결 2017. 9. 12. 백유기

협조자

시행 기업지원과-2019 (2017. 9. 12.) 접수 경제교통과-79830 (2017. 9. 13.)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사립동) / http://gyeongnam.go.kr

전화번호 055-211-3383 팩스번호 055-211-3359 / frogcandy@korea.kr / 비공개(5)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문서관리카드 경제교통과-79830 2/2

함께 웃는 소상공인, 함께 웃는 경남경제



경남신용보증재단

수신 거창군수(경제교통과장)

(경유)

제목 2018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요청

1. 군정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하여 보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증공급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돕고자 불임과 같이 거창군의 출연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2017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요청 1부, 끝.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차장		부장		본부장	김인수	이사장	2017. 9. 8. 이광시
----	--	----	--	-----	-----	-----	--------------------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 2017-1275 (2017. 9. 8.) 접수 경제교통과-78647 (2017. 9. 8.)

우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창원컨벤션센터 4층) / <http://www.gnshinbo.or.kr>

전화번호 055-715-5125 팩스번호 055-715-5130 / kaiser3@gnsinbo.or.kr / 대국민 공개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출연 심의(안)

-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 지원 -

의안 번호	2017-
----------	-------

제출연월일 : 2017. 10. .
제 출 자 :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의거,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2. 출연개요

- 근거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사장 양동인)
- 사 업 비 : 180,0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18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사업기간	2017년 예산액	2018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8년	200	180	180			180	

- 사업내용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인건비 등) 등

3. 부서의견

- 거창화강석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중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운영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함.

4.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 붙임 1
- 관계 법령 : 붙임 2

[붙임 1] 출자·출연 기관현황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설립근거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 규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전화번호 : 055-943-3924		
					홈페이지 : granite.re.kr		
주요연혁	법인설립허가 : '07. 1. 31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16.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명		0명		5명		
임원 ('17.9.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양○○	거창군청(거창군수)			당연직	
	상임이사	김○○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			"	
	비상임이사	이○○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장			"	
		신○○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장			"	
		최○○	거창석재조합(주) 대표			"	
		임○○	거창석산협회장			"	
		임○○	거창군청(기업지원과)			"	
		주○○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수			'16. 3. 21 ~ '19. 3. 20	
		김○○	한국승강기대학 교수			'16. 3. 21 ~ '19. 3. 20	
	임○○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16. 3. 21 ~ '19. 3. 20		
	감사	이○○	거창군청(산림과장)			당연직	
		이○○	이상철변호사사무소 대표			'16. 3. 21 ~ '19. 3. 20	
고문	강○○	모동기업사 대표			-		
주요기능	거창화강석 1, 2차산업 관련 기업지원, 연구 및 개발, 품질유지 및 관리, 공인시험 서비스 등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43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0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164 (자산 총액)
	예산액	400	507	488		부채	18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200	200	200		자본	146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507			370		137	

[붙임 2] 관계법령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 2006.12.12 조례 제182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 2조 (법인격 및 명칭)

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8. 1. 14)

제 3조 (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 4조 (운영 등)

- 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14)
-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조 (임원)

-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6조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7조 (재산조성 및 운영경비)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 8조 (수익사업)

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 9조 (출연금 등의 지원)

-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 11조 (업무의 위탁)

-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 12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출연 심의(안) - 거창화강석 신기술개발 지원 -

의안 번호	2017-
----------	-------

제출연월일 : 2017. 10. .

제 출 자 :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신기술지원사업을 통하여 석산·석재가공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거창화강석의 고부가가치화와 제품 인지도 증대

2. 출연개요

- 근거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사장 양동인)
- 사 업 비 : 290,0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18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사업기간	2017년 예산액	2018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8년		290	290	250	10	30	

- 사업내용
 - 원자재 생산기반 시설지원
 - 가공제품 생산기반 시설지원
 - 석재자원 품질관리시스템 개발
 - 석재표면가공 기술개발
(표면가공복합기법, 보급형컬링스톤 표면가공 기술개발) 등

3. 부서의견

- 석재산업의 애로사항인 원자재 생산기반 시설지원, 석재 표면가공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한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지원사업이 필요함

4.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 붙임 1
- 관계 법령 : 붙임 2

[붙임 1] 출자·출연 기관현황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설립근거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 규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전화번호 : 055-943-3924		
					홈페이지 : granite.re.kr		
주요연혁	법인설립허가 : '07. 1. 31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16.10.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명		0명		5명		
임원 (‘17.9.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양○○	거창군청(거창군수)		당연직		
	상임이사	김○○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		"		
	비상임이사	이○○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장		"		
		신○○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장		"		
		최○○	거창석제조합(주) 대표		"		
		임○○	거창석산협회장		"		
		임○○	거창군청(기업지원과)		"		
		주○○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수		'16. 3. 21 ~ '19. 3. 20		
		김○○	한국승강기대학 교수		'16. 3. 21 ~ '19. 3. 20		
	임○○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16. 3. 21 ~ '19. 3. 20			
	감사	이○○	거창군청(산림과장)		당연직		
		이○○	이상철변호사사무소 대표		'16. 3. 21 ~ '19. 3. 20		
고문	강○○	모동기업사 대표		-			
주요기능	거창화강석 1, 2차산업 관련 기업지원, 연구 및 개발, 품질유지 및 관리, 공인시험 서비스 등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43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0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164 (자산 총액)
	예산액	400	507	488		부채	18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200	200	200		자본	146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507			370		137	

[붙임 2] 관계법령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 2006.12.12 조례 제182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 2조 (법인격 및 명칭)

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8. 1. 14)

제 3조 (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 4조 (운영 등)

- 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14)
-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조 (임원)

-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6조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7조 (재산조성 및 운영경비)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 8조 (수익사업)

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 9조 (출연금 등의 지원)

-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 11조 (업무의 위탁)

-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 12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 심의(안)

의안 번호	2017-
----------	-------

제출연월일 : 2017. 10. .

제 출 자 :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2. 출연개요

- 근거법령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대표 양동인)
- 사 업 비 : 665,0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18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사업기간	2017년 예산액	2018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8년	665	665	665			665	

- 사업내용 : 원어민 보조교사지원,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등

3. 부서의견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장학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원으로
- 거창군의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거창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 붙임 1
- 관계 법령 : 붙임 2

[붙임 1] 출자·출연 기관현황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출연기관)

설립근거	법 률 :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55-940-8812 홈페이지 : www.gcdream.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2005 . 12. 16 - 장학기금 100억원 달성 : 2009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17.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7명		명		17명		
임 원 (‘17.10.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당연직)	양○○		거창군수	당연직(재직기간)		
	상임이사	신○○		민주평통회장	2016.10.31.~2018.10.30		
	이사	박○○		거창군교육장	당연직(재직기간)		
	이사	강○○		모동기업대표	2005.12.16.~2017.12.15		
	이사	이○○		군립요양병원장	2017. 4.17~2017.12.15		
	이사	송○○		전 창호초등학교 교장	2016.10.31~2017.12.15		
	이사	최○○		화성건설 대표	2005.12.16~2017.12.15		
	이사	오○○		전 거창중학교 교장	2016.10.31~2018.10.30		
	이사	김○○		경남학교운영위원연합회장	2016.10.31~2018.10.30		
	이사	도○○		전 거창홍사단 대표	2013.12.16~2017.12.15		
	이사	최○○		김순호세무회계사	2013.12.16~2017.12.15		
	이사	강○○		거창위생 대표	2013.12.16~2017.12.15		
	이사	민○○		거창신문 대표	2016. 8. 5.~2018. 8. 4		
	이사	양○○		의용소방연합회 회장	2016.6.10.~2017.12.15.		
	이사	이○○		함께하는 거창 대표	2016.6.10.~2017.12.15.		
	감사	이○○		이재민세무사대표	2013.12.16~2017.12.15		
	감사	표○○		YMCA 이사장	2016.9.29~2017.12.15		
주요기능	-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필요한 지원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0,515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1,000 (직전연도말 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10,392 (자산 총액)
	예산액	13,228	11,830	11,083		부채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400	1,000	665		자본	10,392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1,633			1,261		10,372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센터)

(제정) 2005.10.05 조례 제1761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전부개정) 2011.01.05 조례 제2014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228호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4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할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의 설립과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제4조(임원)

- ① 장학회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 ② 이사와 감사는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되, 거창군수, 거창군 의회의장,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임면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이사회)

- ① 장학회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무국)

- ① 장학회에는 장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3. 교육여건 개선사업
 4. 국내·외 청소년과의 교류사업
 5.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장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산의 조성)

-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3.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경영을 통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재정지원)

-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타조례개정 2014.12.31.)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장학회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장학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인력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인력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장학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장학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1.01.05, 조례 제20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